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AI 활용 프로그램 또는 광고 고지·표시 의무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59호)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61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2  |
| III . 검토의견 .....                   | 4  |
| 1. AI 활용 프로그램 또는 광고 고지·표시 의무 ..... | 4  |
| 가. 개정안의 내용 .....                   | 4  |
| 나.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규제 동향 .....         | 7  |
| 다. 검토의견 .....                      | 12 |
| 1)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              | 12 |
| 2) 과태료 .....                       | 19 |
| 라.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 21 |

## I . 제안경위

### 【방송법】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4. 2.

다. 회 부 일 : 2026. 4. 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4. 2.

다. 회 부 일 : 2026. 4. 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법】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

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 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1. AI 활용 방송프로그램 또는 광고 표시·고지 의무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방송법】

| 현 행                                                                                      | 개 정 안                                                                                                                                                                                                                                   |
|------------------------------------------------------------------------------------------|-----------------------------------------------------------------------------------------------------------------------------------------------------------------------------------------------------------------------------------------|
| <p><u>&lt;신 설&gt;</u></p>                                                                | <p><u>제73조의3(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의 고지 등) ①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p>제108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0의4. (생략)</p> | <p>제108조(과태료) ① -----</p> <p>-----.</p> <p>1. ~ 10의4.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11. ~ 28. (생략)</p> <p>② · ③ (생략)</p>                                | <p><u>10의5.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u></p> <p><u>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u></p> <p>11. ~ 28.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부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고지 또는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 <p><u>제21조의2(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의 고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p><b>제28조(과태료)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의2. (생략)</p> | <p><b>제28조(과태료) ①</b> -----</p> <p>-----</p> <p>-----.</p> <p>1. ~ 4의2.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br><br>5. · 6. (생략)<br>② (생략)                                                                                                                                                                | <u>4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u><br><br>5. · 6.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고지 또는 표시에 관한 적용례)</b>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                                                                                      |

## 나.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규제 동향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함)은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①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결과물이 생성되었다는 사실, ②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sup>1)</sup>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sup>
  - 이 경우 이용자가 시각, 청각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주된 이용자의 나이나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sup>3)</sup>
  - 인공지능사업자의 표시 의무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

1)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자료제출요구,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규정되어 있음.<sup>4)</sup>

○ AI 기술 발전과 생성형 AI의 보편화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AI를 통해 생산되어 유통되는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었음.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관련 해외 주요국의 규제/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EU)은 2024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키면서, 인공지능 위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 고위험 > 제한된 위험 >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제한된 위험(Limited Risk)에 대하여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표시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음.

-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포

---

####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괄적 규율 대신 자율규제 및 행정명령을 마련해 왔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24년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대규모 생성형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에게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된 콘텐츠'라는 잠재적 표시를 의무화하고 명시적 표시(워터마크) 옵션을 제공하도록<sup>5)</sup> 하였고, 콜로라도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개발 및 이용사업자에게 투명성의무를 부과<sup>6)</sup>하는 등 주별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임.

- 중국은 2023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술적·시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sup>7)</sup>

-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광고로 인한 혼동과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영상 등을 게시하는 때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과<sup>8)</sup>하고 있고, 최근 「식품 등의 표

5)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2024.9.19. 제정)

6) An Act 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s in Interactions with AI Systems (2024.5.17. 제정)

7)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務管理暫行辦法)」 (2023.7.13. 제정)

8)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광고에 관한 법률」 9), 「화장품법」 10), 「약사법」 11) 등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한편, 개별 법률에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제공자나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건<sup>12)</sup>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6.11.27. 시행)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 「화장품법」 (2026.11.27. 시행)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약사법」 (2026.11.27. 시행)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⑦ 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12) 의안번호 제2204932호, 김민전의원 대표발의(2024.10.28.)

의안번호 제2205512호,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024.11.13.)

-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법」<sup>13)</sup>, 「저작권법」<sup>14)</sup>,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sup>15)</sup>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임.

---

의안번호 제2210304호, 김상훈의원 대표발의(2025.5.1.)  
의안번호 제2213740호, 박정훈의원 대표발의(2025.10.28.)  
의안번호 제2216186호, 조인철의원 대표발의(2026.1.20.)  
의안번호 제2216369호, 서영석의원 대표발의(2026.1.27.)  
의안번호 제2216849호, 이주희의원 대표발의(2026.2.12.)

13) 의안번호 제2200048호, 강유정의원 대표발의(2024.5.31.),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작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 부과

14) 의안번호 제2205507호,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024.11.13.),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물 창작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 부과

15) 의안번호 제2214841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025.12.3.),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게임물 제작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 부과

## 다. 검토의견

### 1)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 현행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IPTV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에게는 인공지능기술이나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 이용자 고지 또는 표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방송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생성물로 인하여 시청자의 혼동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등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여부를 시청자에게 고지·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송사업자등을 규제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방송사업자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기본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지·표시 의무를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sup>16)</sup>에게만

---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과하고 있을 뿐, 그 결과물을 유통하는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있지는 않음.

- 이는 법 제정 당시 단순 인공지능기술 이용자에게까지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산업 발전이 위축  
될 우려를 반영한 것임.

○ 방송사업자들은 인공지능기술 이용자에 불과하여 인공지능기본  
법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의 수범자가 아닌데, 개정안은 인공  
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이하 “방송프로  
그램등”이라 함)를 제작 또는 편성하는 경우에도 시청자에 대하  
여 고지·표시 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sup>17)</sup>에 따르면 인공지능기  
술을 이용하여 CG(컴퓨터그래픽)를 생성한 후 영화에 삽입한  
영화제작자 등 단순히 제품·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을 자신의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송사업자들이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방송프로그램등을 단  
순히 편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기술을 직접 활용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  
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6.1.)

여 방송프로그램등을 제작하는 경우 모두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 대신 이용자로 분류되므로 같은 법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

|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대상                   |                                 |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불필요                        |                     |            |
|-----------------------------------|---------------------------------|-----------------------------------------|---------------------|------------|
| AI 디에이징<br>기술개발사                  | 영화용 AI 디에이징<br>서비스 제공사          | 영화 제작사                                  | OTT 플랫폼             | 소비자        |
| 얼굴인식 및 변형<br>핵심 AI 기술을<br>개발 및 제공 | 영화 산업에 맞게<br>특화, 디에이징<br>서비스 제공 | AI 디에이징 기술을<br>활용한 콘텐츠 기획,<br>촬영, 최종 제작 | 완성 콘텐츠를<br>소비자에게 제공 | OTT 플랫폼 구독 |
| AI개발사업자                           | AI이용사업자                         | 이용자                                     | 해당 없음               |            |

자료: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2p

-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기본법<sup>18)</sup>에서 기술의 활용도 제고 및 산업 발전 측면에서 규제 대상을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인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그 결과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 방송프로그램등의 외주 제작 비중이 높은 국내 방송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편성’만 하는 방송사업자들에게 고지·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등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등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고지·표시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외주 제작사로부터 납품받는 프로그램이나 광고의 경우 방송사업자등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여부나 구체적 활용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특히, 제작 공정의 미세한 부분이나 단순 보정 등에 인공지능기술이 결합된 경우, 편집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등이 사후 검증만으로 이를 식별하여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임.
- 이와 같이 방송프로그램등의 제작 주체(외주 제작사)와 유통 주체(방송사업자등)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제어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외부의 제작 행위를 이유로 법적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행위나 책임 범위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상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방송사업자등의 편성 단계에 고지·표시 의무를 강제하기에 앞서, 제작 주체의 정보 제공 책임을 선행하도록 하거나 방

송사업자등의 현실적인 검증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규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인공지능기술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모든 경우에 고지·표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정보의 과잉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나 가상 인물 생성 등 콘텐츠의 본질적 내용을 창작·가공하는 기술부터 대본 작성, 화질 개선, 색 보정 등 제작과정 전반에 인공지능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sup>19)</sup>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고지·표시의 변별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단순한 사진·영상 보정에 기술을 활용한 경우나 인공지능기술 활용 콘텐츠를 시청자가 오인할 여지가 없어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고지·표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방송프로그램등에 고지·표시 문구가 상시 노출될 경우 정보의 과잉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바, 고지·표시가 필요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범위와 수준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 「광고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KOBACO, 2025.12.)에 따르면 광고제작 노동자가 응답한 광고제작에서의 AI 기술 활용 방식으로 ‘기획 및 아이디어 발상 및 카피작성’(회사 소속), ‘편집, 합성, CG 등 후반작업 자동화’(프리랜서)가 각각 1순위를 차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sup>20)</sup>, 「약사법」<sup>21)</sup> 등은 규제 대상을 ‘인공지능 생성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방송프로그램등의 장르적 특성이나 시청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지·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화, 드라마 등 창작성과 예술성이 강조되는 픽션 장르의 경우 시청자 역시 CG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르에까지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을 상시 표시할 경우 시청자의 몰입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항 후단<sup>22)</sup>에서도 결

---

2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6.11.27. 시행)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 「약사법」 (2026.11.27. 시행)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⑦ 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sup>23)</sup>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반면, 뉴스나 시사·교양 등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진위 여부가 시청자의 판단이나 여론 형성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시청자 오인을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시청자의 오인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 의무 적용 수준 등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23)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주요 콘텐츠와 차이를 두어 표시하거나 비가시적인 표시(메타데이터 등)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2) 과태료

-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IPTV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인공지능기본법과 비교할 때 인공지능기술 활용 결과물에 대한 규제체계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생성물 고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고,<sup>24)</sup>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sup>25)</sup>할 수 있음.

###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이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자율적 시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그러나 동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등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공지능 관련 규제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 고지·표시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sup>26)</sup>이나 생성형 인공지능<sup>27)</sup>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생명·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함.

○ 한편,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기준이 되는 인공지능기본법조차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 결과

---

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27)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물을 단순 편성·유통하는 방송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둘째, 두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는 3천만원의 상한이 적용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IPTV사업자에게는 1천만원의 상한이 적용는데, 과태료 상한이 서로 다른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과 제작 및 송출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IPTV사업자는 콘텐츠를 공급받아 제공만 하거나 콘텐츠를 공급만 할 수 있고,<sup>28)</sup> 방송 제공사업을 하더라도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는 점<sup>29)</sup>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에도, 사업자의 성격 차이가 제재처분의 상한을 다르게 정할 정도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 라.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정 동의) 방송의 공적 책임 측면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표시하여 시청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함.
  - (방송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보도 등 사실 전달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의무 부과할 필요
  - (방송광고) ①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 사용 여부를 알기 어렵고, ②AI활용에 따라 시청자 권익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며, ③AI 활용 광고 제작이 대중화되고 있고, ④허위광고는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률로 이미 규율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지·표시 의무에서 제외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생성물의 생성·제공 단계에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 제도의 안착과 AI산업 혁신을 고려하여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 중인바, 규제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①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고지 또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시청자에게 해악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반면, 이로 인한 콘텐츠 경

쟁력 약화, 시청자 몰입 방해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며, ②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수범자인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불과함에도 인공지능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으며, ④인공지능기술 활용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 (MBN: 신중검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시청자의 혼동 방지와 미디어 신뢰도 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활용범위가 넓은 AI기술 특성상 일률적 법제화는 제작현장의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수정 동의) 지상파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채널을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에 AI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 사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송출하는 과정에서 AI기술 적용 여부를 표기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및 광고 제작사가 AI기술 적용 여부를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신중검토)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 방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하고 허위정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나,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①방송사업자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및 영상제작사가 제작한 방송광고를 제공받아 편성할 뿐이므로 인공지능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음.
- ②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기획, 대본 작성, CG, 3D그래픽, 일러스트, 영상보정 등 다양한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광범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고지 대상으로 볼 경우 정보 과잉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 전달이 어려워질 것이고, 실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을 넘어서는 과도하게 확장된 규제로 작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
|--------------|
| 문 의 처        |
| 02)6788-5226 |